

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!

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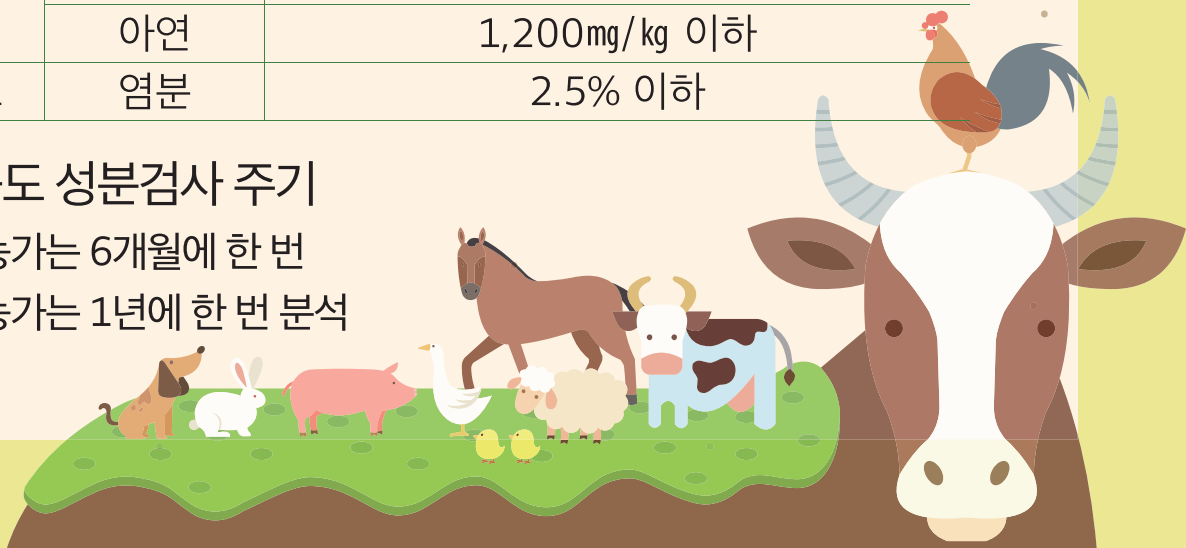
▶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

축 종	항 목	기 준
모든 가축	부숙도	1,500m ² 이상/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
		1,500m ² 미만/부숙 중기
	함수율	70% 이하
돼지	구리	500mg/kg 이하
	아연	1,200mg/kg 이하
소·젓소	염분	2.5% 이하

▶ 퇴비 부숙도 성분검사 주기

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

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



퇴비 부숙도 검사기관 검색 및 신청방법은!

- ▶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
- ▶ 농사로(www.nongsaro.go.kr) 홈페이지
농자재/비료/시험연구기관 목록에서 열람 가능
- ▶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
및 지방농업진흥기관



퇴비 부숙도 검사 대비 농가 실천사항은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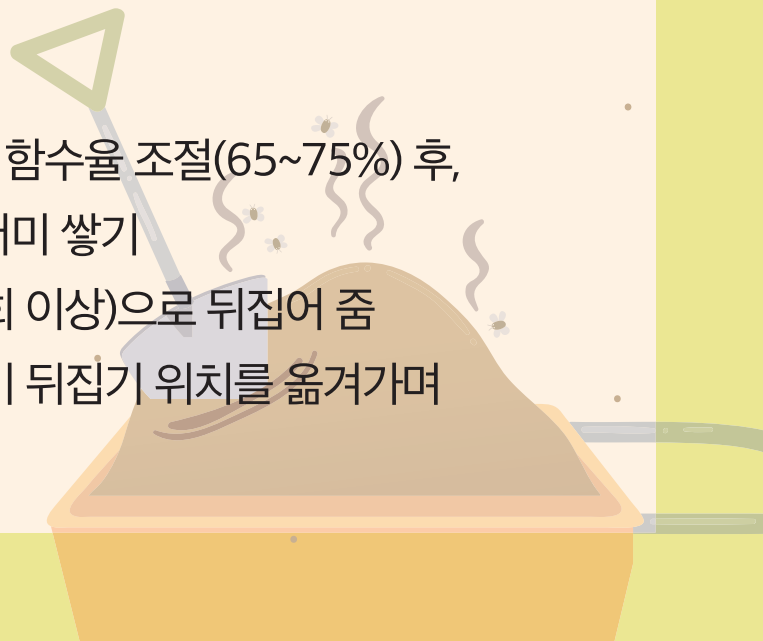
▶ 축사바닥(깔짚) 관리

- 우상 깔짚이 질퍽해지지 않도록(수분 70% 이하)
수분조절재(톱밥 등)를 보충해주며 관리
- 로터리 작업에서 교반할 시 환경개선제 살포
- 축사바닥 상태에 따라 주기적 교반 실시(주 1회 정도)



▶ 퇴비사 관리

- 우상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함수율 조절(65~75%) 후,
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이용해 더미 쌓기
- 부숙 완료 시까지 주기적(주 1회 이상)으로 뒤집어 줌
- 퇴비사 공간이 충분할 경우 더미 뒤집기 위치를 옮겨가며
쌓기를 하면 효율적임





퇴비 부숙도 성분검사용 시료 채취 시 주의할 점은!

- ▶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



- ▶ 시료명, 채취날짜, 주소, 시료내역 등을 기재
- ▶ 시료를 운송할 때에는 밀봉하여 온도, 직사광선에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
- ▶ 7~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, 불가피한 경우 온도가 20℃ 이상 넘지 않도록 주의



※ 퇴비 성분분석 결과지는 3년간 보관

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면제 대상 농가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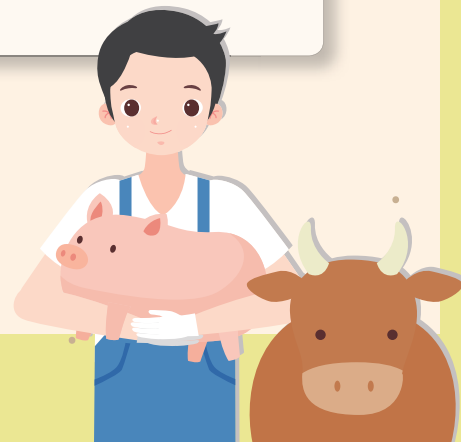
▶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

축종	사육규모	사육두수
한우	264m ²	22두
젖소	120m ²	10두
돼지	161m ²	115두

▶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



퇴비 부숙도 검사 면제



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은!

▶ 부속도 기준 준수 위반 시

→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,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

▶ 퇴비성분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보관 의무
위반 시

→ 과태료 100만원 이하



금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속도
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되,

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.

(계도기간에는 행정처분을 유예)